

의안번호	제 72호
의결년월일	1999. 1. 21.
의결사항	원안가결

발의자	김연정의원외3인
제출 년월일	1999. 1. 21.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

수신 보은군의회의회장

제목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 관한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 1부. 끝.



발 의 자 :

(찬성의원서명 : 붙임참조)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

1. 제안이유

보은군의회에서 제정, 개정하는 규칙을 공포함에 있어 공포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위함.

2. 주요골자

“별지 규정안 참조”



보은군의회규정 제 5 호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은군의회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3조(번호) ①규칙은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제4조(공포) 규칙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안 찬 성 의 원 서 명

성 명	서 명	(인)
구 익 치		
정기행		
동 인 복		
		